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8.12.11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23-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/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6		
의결번호	2018-2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합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.</li> <li>○ 의사당대로 주차출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전자 시야 확보방안 마련 바람.(자전거보관소 위치 이전, 공개공지 코너부 조성계획 개선 등)</li> <li>○ 증축하는 복합판넬 마감과 기존 유리면 마감이 만나는 부분, 라운드와 직선면이 만나는 부분의 마감은 시공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실시 설계시 디테일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바람.</li> <li>○ 지하주차장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 수립 바람.</li> <li>○ 공개공지 위치 완화 신청 인정함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과 제연설비 설치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겸용 등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바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축을 위한 내부 구조변경시 보 단부 강성을 저하시키므로 단순보 등의 진동에 대하여 검토 바람.</li> <li>○ 기존 구조부와 신설(증축) 구조 접합부에 대한 검토 및 추가 하중에 따른 기존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8.12.11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8.12.11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23-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/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6		
의결번호	2018-2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			
<b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(계속)			
○ 신·구 구조체의 접합에 있어 현장에서 과도한 시공 수준을 요구하는 접합 상세는 가급적 지양하고, 이에 대해 사전에 구조계획 측면에서 검토 바람.			
○ 증축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기존 구조물의 내진검토 결과를 제시 하기 바람.			
○ 증축 부위 기초의 지내력 검토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○ 냉방부하 증가에 따른 실외기실, 주방 등 배기부 탈취 유니트의 옥상정원내 설치 위치와 주변 영향 검토 바람.(특히 공개공지 이용자에 영향이 없도록 지상4층 상부로 배기토록 노즐 설치 검토 바람)			
○ 증축하는 건축물이 대부분 식음계통의 용도이므로 배기 탈취구, 식자재 보관, 하역장, 음식쓰레기 등 기반 유틸리티 시설 공간 계획 바람.			
○ 기계, 전기, 소방 등 설비계획(냉난방 증가, 변압기 용량 증가 등)은 증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만 제시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			
○ 교목 식재시 토심은 1.5m이상 확보 바람.			
○ 옥상정원 내에 있는 탈취 유니트 및 실외기 시설은 옥상정원 사용자의 소음 및 시야 차단을 위하여 차폐 식재 등 계획 바람.			
<b>&lt; 교통분야 &gt;</b>			
○ 의사당로 지하차도 진입부 전면 노면표시에 대해 차로 운영상황에 적합하도록 노면 표시방향을 수정하고, 노면 문자 사인을 추가하여 이용상 혼란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8.12.11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8.12.11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여의도동 23-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/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6		
의결번호	2018-2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+ 교통 심의			
<b>&lt; 교통분야 &gt;(계속)</b>			
○ 지상1층 조업주차면(3면)은 조업공간과 진출입차량이 교차하면서 안전사고 및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			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환경성능 부분 필수 항목 적용			
○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: 4급 이상			
○ 절수형 기기 사용: 3급 이상			
○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: 4급 이상			
나. 에너지 성능 부분 중 절감기술 적용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8.12.11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